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1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김민석·박상혁·이형석

최혜영 · 인재근 · 윤재갑

강병원 • 이상헌 • 강득구

홍정민 · 윤영찬 · 송영길

박홍근 · 강준현 · 서동용

김성주 • 맹성규 • 조승래

송재호 • 윤건영 • 남인순

강민정 • 이탄희 • 최종윤

홍성국 · 서영교 · 박영순

정춘숙 · 김영호 의원

(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이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임용과 면직 절차,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 수립이 필요함. 특히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 면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 절차를 거치게되나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 정성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 처리됨.

이에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 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 하도록 면직 예고 의무제 도입이 필요함(안 제7조 등).

법률 제 호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전문성 및 직업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제3조(신분) 보좌직원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4조(임용권자 등) ①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한다.
 - ② 국회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보좌직원의 자격요건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

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임용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
- 제6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보좌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7조(면직 예고)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예정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서면으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면직 예고의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보좌직원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 실시) ①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보좌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절차,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보좌직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보좌직원의 정원

보좌직원의 정원

보 좌 직 원			정 원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刊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刊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刊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刊		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刊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